

古文書의 類型別 分類에 관한 研究**

李 春 熙*

目 次

- I. 緒 言
 - 1. 研究目的
 - 2. 研究의 方法 및 制限
- II. 先行研究
- III. 古文書의 分類基準問題
- IV. 類型別 分類法(試案) 解説
- V. 結 語
- 附錄: 古文書分類法(試案)

I. 緒 言

1. 研究目的

史料의 價値가 높은 貴重한 옛 文書와 記錄類들이 戰亂과 管理의 소홀로 말미암아 무수히 湮沒되어 갔으며, 現在 남아 있는 것들도 그 量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全國의 規模의 調査가 이루어진바 없어 그 實態를 제대로 把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리고 일부 公共機關에 所藏되어 있는 古文書들 가운데는 整理의 未備로 그 活用이 不可하여 연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貴重한 古文書 들을 보호하고, 보다 효율적인 管理와 利用을 위해서는 이들 古文書의 收集·保管·整理·利用등에 관한 지속적인 研究와 開發이 절실히 要望된다고 하겠다.

本 研究는 古文書의 保存과 管理에 있어서 가장 基本이 되는 分類問題를 다루고, 이와 아울러 韓國古文書의 特殊性을 고려한 分類法 試案을 提示함으로써 이 分野의 개발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져 하는 데

* 成均館大學校 圖書館學科 教授

** 本 研究는 1982年度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있다.

2. 研究의 方法 및 制限

本 研究에서는 朝鮮朝時代의 古文書로 그 對象을 制限하고, 收集文書別로는 規模가 작은 文書集團을 대상으로 하였다.

古文書의 分類에 있어서는 分類對象이 되는 收集文書의 質과 量에 따라 크게 두가지 方法을 생각할 수 있겠다. 卽 그 하나는 古文書를 包含하여 모든 記錄類를 함께 收集·保管하고 있는 比較的 큰 規模의 例를 들면 政府記錄保存所와 같은 專門的인 기관의 文書를 대상으로한 分類方法이고, 다른 하나는 도서관이나 박물관 혹은 개인 등이 特別한 계획없이 그때 그때 收集·保管한 小規模의 文書들을 대상으로한 分類方法이다. 前者의 경우는 文書의 出處가 확실하고, 後者の 경우는 그 出處가 不分明한 것이 또한 特徵이기도 하다.

朝鮮朝時代의 文書에 관한限 後者에 속하는 收集文書가 압도적으로 많음으로 여기에서도 이를 대상으로한 分類法 試案을 먼저 장성케 되었다.

分類的 理論의 背景으로는 文書의 경우도 圖書의 一般分類理論과 基本的으로는 큰 차이가 없음으로 이에 관한 先行理論과 文獻들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本 分類法 試案에서는 몇가지의 分類基準을 채택하고는 있으나, 특히 이중에서도 根幹을 이루고 있는 基準이 “類型別”이다. 類型別의 用語 채택에 있어서는 經國大典을 비롯한 朝鮮朝時代의 各種 政法關係 基本資料外에 金東旭²⁾ 崔承熙³⁾ 兩教授의 研究와 古法典用語集⁴⁾을 많이 參考하였다.

-
- 1) Maltby, A. Sayer's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London, Andre Deutsch, 1978; Ranganathan, S.R.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London, Lib. Assoc., 1957; Ranganathan, S.R. Colon Classification. 6th ed. Bombay, Asia Pub., 1960. 등
 - 2) 金東旭: 李朝古文書의 分類에 대하여 (人文科學資料叢書; 6. 古文書集眞) 서울, 延大出版部, 1972.
 - 3) 崔承熙: 韓國古文書研究. 서울, 精神文化研究院, 1981.
 - 4) 法制處: 古法典用語集. 서울, 育志社, 1979.

本 研究의 對象에서 除外된 1910年 以後의 文書와, 古文書와 더불어 記錄類도 함께 保管하고 있는 기관들을 위한 分類問題는 後日의 研究課題로 남게 되겠다.

II. 先行研究

우리나라 古文書의 分類問題에 대하여 發表한 內容들을 대강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白麟氏는 1964年에 發表한 “古文書의 研究와 그 整理問題”에서 古文書의 整理, 保存 및 利用을 위한 特殊分類表의 必要性을 강조하고, 文書의 內容範圍와 그 量의 多小에 따라 分類方法이 定해져야 한다고 하였다.⁵⁾ 卽, 分類表의 必要성과 그 方法으로 考慮되어야 할 點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는데 그쳤고, 具體적인 分類法이나 分類表를 提示하지는 않았다.

- A. 內容의 性格
- B. 形態에 의한 分類
- C. 郷土資料로서의 特別細分
 - 가. 地域區分
 - 나. 官衙別區分
 - 다. 家門別區分

金約瑟氏는 “古文書論考”에서 우리나라 古文書의 種類를 ①公文書 ②私文書 ③準公文書, ④事大文書 ⑤交隣文書로 分類하고, 私文書를 다시 對私文書와 對公文書로 나누었다.⁶⁾ 이것은 文書의 類型別 分類라기 보다는 그 性格과 目的에 따라 文書의 種類를 열거한데 그친 것이라 하겠으며, 그 以上の 구체적인 展開도 또한 없다.

우리나라 古文書의 分類問題를 本格的으로 다룬 最初의 研究는 아마도 金東旭教授의 “李朝古文書의 分類에 대하여”라는 論文일 것이다.

金教授는 이 論文에서 古文書의 授者와 受者와의 關係를 고려하여 그

5) 白 麟 : 古文書의 研究와 그 整理問題, 國會圖書館報, V.1. No 4. p.101~110.

6) 金約瑟 : 古文書論考, 國會圖書館報, V.4. No 8~10 (1967.8~10)

基本對象으로 다음 10 개 項目을 설정하고 各 項目마다 固有番號(0~9)를 배 당하였다.

總	0	士民	5
國王	1	結社	6
王族	2	神佛	7
官員	3	外交	8
胥吏	4	其他	9

그리고 發給者와 受取者의 關係를 記號로 나타내고저할 경우에는 이들 固有番號를 相互連結하여 例를 들면 國王對官員의 文書는 1-3으로, 官員對官員의 文書는 3-3으로 各各 表示하게 되어 있다. 이와같이 金教授는 授受者 間의 關係에 主眼點을 두고 우리나라 古文書의 種類를 모두 다음과 같이 11개 部門으로 나누었으며, 各 部門別에서는 이에 該當되는 文書들을 열거하고 있다.⁷⁾

1. 國王文書(公私文書)
2. 宮家文書(准公文書)
3. 官民逮上國王 文書
4. 官相互 授受 文書
5. 官對民 文書
6. 民對官 文書
7. 民對民 文書
8. 神(巫)·佛·儒家 文書
9. 結社 文書
10. 外交 文書
11. 國末 文書

分類記號는 授受間의 關係를 表示하는데 그쳤으며, 그 以上の 展開는 없다. 아 물론 金教授의 이 分類方式은 우리나라 古文書 分類에 관한 最初의 試案이라는 點에서 그 意義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古文書의 分類 基準을 授受者의 關係에 두고 있다는 點도 매우 特

7) 金東旭：前揭書，p.12

色있는 觀點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案에서 分類의 理論上 問題되는 點도 없지 않아 있기에 參考로 적어 두고자 한다. 이 案에서 授受者의 對象으로 列擧한 10개의 基本 項目들은 경우에 따라 發給者도 될 수 있고 受取者도 될 수 있어야 하나, 이 중에서 몇가지 項目들은 授受者間의 關係設定에 있어서 對象이 될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論理上 混亂을 빚게 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總(0), 外交(8), 其他(9)와 같은 項目이 그것이다. 金教授의 分類에서 이들 項目과 관련이 있는 몇가지 事項들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 ㉠ (1-0) 綸音 國內 國王文書 : 王→民 文書
- ㉡ (0-1) 冊寶 國內 王←百官(王世子, 世孫, 百官大臣, 宗親)
- ㉢ (7-0) 訃告 國內 私文書
- ㉣ (3-0) 帖文 國內 官·公文書, 官共通文書
- ㉤ (3-5) 下帖 國內 官對民 郡衙 公文書
- ㉥ (1-8) 咨文 外交文書. 對中國 文書
- ㉦ (1-8) 箋文 外交文書. 對中國 文書
- ㉧ (1-8) 國書 外交文書. 對倭·野人文書
- ㉨ (3-5.9) 題音·拷音(제집)·題辭. 官對民 共通 副文書
- ㉩ (1-9) 批答·下批 國內 國王文書
- ㉪ (1-9) (親祭)祭文 國內 國王文書

먼저 “0”의 “總”을 알아 보면 ㉠과 ㉡에서는 “民”의 뜻으로, ㉢에서는 百官의 뜻으로 ㉣에서는 一般 私家, 官家의 뜻으로 使用하고 있어 大體로 一般性を 띤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5”의 士民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卽 ㉤의 “5”와 ㉠㉡㉣의 “0”과 混亂을 빚게 한다.

“8”의 外交文書는 처음부터 授受의 對象이 될수 없는 項目으로 論理上의 보수를 지니고 있다. ㉥과 ㉦에서 “1”은 國王을 “8”은 外交文書を 각각 의미하고 있어 發給者와 受取者의 關係가 不分明하다. ㉥과 ㉦이 對中國 外交文書라고 한다면 “8”은 마땅히 受取國인 中國을 의미하는 記號로 사용되어야 옳을 것이다. ㉧(1-8)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對倭·野人文書라고 한다면 受取對象이 되는 “倭”가 마땅히 記號上에 나타나야 하는데 “8”이 外交文書を 의미하는 記

號로 사용됨으로써 授受의 關係가 혼들리고 있다.

“9”의 “其他”는 “0”에서 “8”까지의 各項目에 속할 수 없는 나머지를 受容하기 위해 설정된 項目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㉔의 “9”는 民의 뜻으로 ㉑의 “9”는 官員의 뜻으로 ㉕의 “9”는 神의 뜻으로 各各 사용하고 있어, 이미 설정된 다른 項目들과 重複되고 있다. ㉔의 “9”는 위에서 例示한 “0”과 ㉑의 “9”는 官員을 의미하는 “5”와 ㉕의 “9”는 神·佛을 뜻하는 “7”과 서로 重複되는 例로서 이들 項目間의 限界를 보다 分明히 할 必要가 있다.

崔承熙教授는 “韓國古文書研究”에서 한국의 모든 古文書를 크게 國內文書와 外交文書로 二大別하고, 國內文書를 1) 國王文書 2) 王室(宮房)文書 3) 官府(官吏)文書 4) 私人文書 5) 寺社文書 6) 書院文書 7) 道觀文書 8) 結社文書 9) 奉神佛文書로 區分하였다. 그리고 이들 各項을 授受의 關係에 따라 다음 例와 같이 細分하였다.⁸⁾

1) 國王文書

- (1) 對王室; ①玉冊 ②竹冊 ③諡冊 ④教命 ⑤遺教
- (2) 對官府(官吏); ①教(命) ②教書 ③諡書 ④有旨 ⑤密教 ⑥教旨 ⑦教牒 ⑧祿牌 ⑨封書 ⑩錄券 ⑪批答 ⑫宣牌 ⑬下膳狀
- (3) 對私人; ①教書 ②綸音
- (4) 對寺社·書院·道觀·結社; ①賜牌 ②賜額 ③教旨 ④教書

一次分類를 發給者別, 二次分類를 受取者別, 그 다음은 이에 該當하는 古文書의 種類를 列舉하고 있다는 點에서 基本的으로는 金東旭教授의 分類方法과 類似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項目의 選定과 配列順位 등이 다를 뿐이며, 特히 崔教授의 이 著書는 分類를 目的으로 한 研究가 아니기 때문에 分類記號에 대한 問題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分類의 기준을 授受의 關係에 두고 있다는 點에서 한가지 問題가 되는 것이 9)의 “奉神佛文書”이다. 이 項目은 二次分類 기준인 受取者群에는 들수 있으나(勿論 假想의 受取者이지만) 一次分類 기준인 發給者群에는 들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勿論 特殊文書이기 때문에 맨 끝에다 이러한 項目을 設定하여 特別取扱을 한 것이라고 理解는 되나, 分類 理論에는 맞지 않는 項目이라 하겠다.

아무튼 이 分類에서 記號의 問題를 다루고는 있지 않았으나, 全體的

8) 崔承熙: 前揭書, p. 29 ~ 38

으로 특히 二次, 三次 分類에 列擧하고 있는 項目들은 우리나라 古文書의 特性을 잘 살린 體系의인 排列이라고 여겨진다.

以上에서 살펴 본 兩教授의 分類方法을 要約하면 분류기준은 모두 古文書의 ①發給者群別, ②受取者群別, ③類型別의 세가지에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方法을 擇하게 된 것은 古文書의 特徵인 授受의 關係와 그 形式을 重要視한데 있다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出處의 原則을 適用할 수 없는 少量의 古文書들을 分類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方法이 가장 適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兩教授의 分類는 書架分類를 前題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完成된 分類法(表)이라고는 할수 없겠다.

Ⅲ. 古文書의 分類基準問題

分類에 있어서 가장 基本이 되는 重要な 要素가 分類基準(原理)(Principle of Division)이다. 古文書 分類에 있어서도 適用이 可能的 分類基準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그 特性이 무엇인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므로써 類型別 分類의 特性도 보다 確實하게 把握될 수 있을 것이다.

一般 古文書를 對象으로한 分類基準을 열거해 보면 大體로 다음 일곱 가지로 집약될 수 있을 것 같다.

- ① 出處別
- ② 類型別
- ③ 主題別
- ④ 地域別
- ⑤ 年代別
- ⑥ 發給者別
- ⑦ 受取者別

위의 열거한 것 以外에도 收入順別, 件名(主題)의 字母順別 등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겠으나 本 分類目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일단 除外하였다. 아 물론 위에 열거한 것 중에서도 完全하고 滿足할만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각기 長短點이 있어 한가지만을 고집하였을 경우 이에 부수되는 短點과 不便이 반듯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한가지씩

그 特性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出處別 分類

이 分類基準은 앞에서든 言及한 바와 같이 公共機關이나 團體의 文書를 引受받아 관리하는 記錄保存所 등에서 必要로 하는 基準임으로 本試案의 對象인 散發的으로 수집된 古文書에는 不適當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수집된 古文書의 種類와 性格에 따라 適用 可能 與否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정에 따라서는 一部 古文書만을 對象으로 하여 이 基準을 適用하는 方法도 있을 수 있겠다. 保管文書 중 出處가 확실한 文書들만을 別途 保管하고자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예를 들어 甲氏家門에서 保管되어온 古文書들을 引受받은 한 文書館에서 이를 別途로 保管하고자 할 경우 甲氏家門의 文書全體를 한 單位로 取扱하여 他集團의 古文書 속에 混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甲氏門中の 教旨가 他集團 文書의 教旨와 한자리에 排列될 수는 없겠다.⁹⁾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出處別로 分類하고자 하는 記錄保存所에서는 出處인 該當機關의 行政組織이나 機構에 따라 자료를 排列·保管하게 됨으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圖書分類와 같은 分類表가 必要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歐美諸國의 主要記錄保存所(Archives)들에서도 그들의 오랜 경험을 통해 記錄·文書類를 分類한다는 것은 오히려 記錄·文書類가 지니는 本來의 기능을 상실케할 뿐만 아니라 利用上으로도 많은 問題點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記錄·文書類는 分類하지 않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¹⁰⁾ 따라서 그들은 用語에 있어서도 一般圖書를 對象으로한 分類(classification)라는 말보다는 記錄·文書類의 경우는 排列(Arrangement)이라는 말이 더욱 어울리는 表現이라고 보고 있다.¹¹⁾

그러나 收集 當初부터 分散된 狀態로 保管되어 내려온 古文書들은 相

9) 이런 경우는 別置表示記號를 사용하여 區別할 수도 있겠다. IV章 9의(i) 參照.

10) Schellenberg, T.R. The Management of Archives. N.Y., Columbia Univ., 1965, p.32-45; Holmes, Q.W. Archival Arrangement ... The American Archivist, V.27, No 1 (Jan. 1964) 등

11) Cook, M. Archives Administration. Kent, Dawson, 1977. p.103-104.

互 關聯性이 없고 한낱 個別文書로서의 機能만을 지니고 있을뿐임으로 分類 單位를 文書 하나 하나에 두는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②의 類型別 分類가 보다 便利한 方法이라 여겨진다.

② 類型別 分類

古文書의 類型에 基準을 둔 分類法으로서, 우리나라의 一部 圖書館에서는 이미 書誌分類이기는 하나 이 方法으로 分類한 例가 더러 있다.¹²⁾

모든 文書는 內容에 따라 그에 맞는 一定한 形式을 갖추어 作成하게 된다. 따라서 內容과 形式은 不可分의 表裏 關係에 있다고도 할수 있겠다. 그러나 形式이 곧 그 文書의 內容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例를 들면 紅牌일 경우 그 뜻을 大科 及第者에게 수여하는 合格證書라고 한다면 內容은 某王이 某年에 文科(또는 武科) 某科 第幾人 及第出身者인 某甲에게 수여한 合格證書가 되겠다. 다시 말해서 紅牌라고 하는 題目만을 보고서는 그것이 大科 及第者에게 수여하는 合格證이라는 것 以上の 다른 具體的인 內容들은 알수가 없다. 그러므로 內容에 따라 一定한 形式을 갖추었다고 해서 形式에 기준을 둔 分類가 곧 內容別 分類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아름든 類型別 分類는 그 基準을 文書의 形式에 둔 것이지만 實際에 있어서는 文書의 種類를 文書가 作成된 目的과 性格에 따라 열거하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겠다. 바꾸어 말하면 文書의 作成目的과 性格이 달라지면 그 文書形式도 달라짐으로 形式에 의한 分類는 곧 文書의 種類를 意味한다고 볼수 있겠다. 그러나 一般圖書館의 경우는 이러한 公式이 卽 形式別의 分類가 곧 圖書館의 種類가 된다고는 할 수 없겠다. 一般圖書館는 文書처럼 그 圖書館의 目的과 性格에 따라 一定한 形式을 갖출 必要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一般圖書館를 對象으로한 類型別 分類는 不可能하지만, 古文書를 對象으로 한 類型別의 分類는 可能할 뿐만 아니라 그 文書의 性格과 目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長點도 지니고 있다. 어떻게 보면 文書의、題目別(By Topic) 分類라고도 할수 있을지 모르나, 다음에 言及하고자 하는 主題別 分類와는 엄연히 區別된다고 하겠다.

③ 主題別 分類

12) 국립도서관 : 古문서해제, I. II. 1972-73.; 光山金氏 烏川古文書(精神文化研究院) 1982 등이 있음.

文書의 內容 卽 主題에 基準을 둔 分類이다. 이 分類法은 類型別 分類와는 反對로 一般圖書에는 그 適用이 可能하나 文書에는 不適當한 方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表<1>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3件의 文書를 類型別로 分類하면 (1) 立議 (2) 牒呈 (3) 狀啓로 文書 1件當 分類되는 자리도 하나이다. 그러나 主題에 基準을 두고 分類하게 되면 文書 1件當 分類되는 자리가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文書에 따라서는 두개 以上되는 경우도 있다. 表<1>의 경우는 3件의 文書가 모두 “書院”이라는 한 가지 主題에 分類될 수 있지만, 表<2>의 경우는 文書마다 둘 내지

表<1> 文書分類例¹³⁾

	文書內容	類型別分類	主題別分類
(1)	白雲洞書院斯文立議	立議	i) 白雲洞書院
(2)	白雲洞書院移屬各司 奴婢事(豊基郡守牒報事)	牒呈	i) 白雲洞書院
(3)	白雲洞書院儒生 供饋役事事(監司狀啓)	狀啓	i) 白雲洞書院

表<2> 文書分類例¹⁴⁾

	文書內容	類型別分類	主題別分類
(1)	抱川縣柯山面居住 李龍柱에게 抱川縣監이 1789 年에 發給한 准戶口	准戶口	i) 李龍柱 ii) 抱川縣 iii) 戶籍
(2)	金祖淳爲資憲大夫兵曹判書 兼同知經筵事者(1800 年)	教旨	i) 金祖淳 ii) 兵曹判書 iii) 發令狀
(3)	幼學李章祚生員二等 第十三人 入格者	白牌	i) 李章祚 ii) 生員科合格證書

13) 文書로는 適當한 것이 없어 紹修書院謄錄에서 引用하였음.

14) 국립도서관: 前揭書.

셋 이상의 主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一般圖書에서의 複合主題 처리 방법과는 달리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며, 더구나 書架分類에 目的을 두고 있는 限 制의 實現 可能性이 없는 方法이라 하겠다.

表〈2〉의 (1)를 보면 主題가 셋으로 i)의 “李龍柱”는 文書를 戶主의 姓名別로 排列하고자 할 경우이고 ii)의 “抱川縣”은 戶籍을 發給한 官廳別(또는 地域別)로 배열할 경우이며, iii)의 “戶籍”은 文書의 形式도 함께 고려하여 배당한 主題로서 이 文書의 內容 卽 戶主나 發給官廳에 關係 없이 戶籍이라는 形式을 갖춘 文書는 分散되지 않고 모두 이 자리에 排列될 수 있도록 한 경우이다. 여하간에 이 文書의 排列을 위해서는 이들 세가지 主題 중 어느 한가지를 選擇하여 이에 準한 分類記號가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複雜한 複合主題들의 輕重을 가려내어 그 順位를 決定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 실령 그것이 實現되었다 하더라도 能率적인 면에서는 지극히 번거롭고 不便한 方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文書의 主題別 分類은 그 目的이 書架分類에 있지 않고 書誌分類에 있을 때 그 適用이 可能하다고 할수 있겠다.

④ 地域別 分類

文書의 內容과 관련이 있는 地域에다 기준을 둔 分類方法이지만, 모든 文書를 처음부터 地域別로 分類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 文書에 따라서는 地域別 分類을 하므로써 便利한 때도 있지만, 어떤 文書는 地域別 分類의 適用이 不可能하거나 혹은 適用된다 하더라도 별 意味가 없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前記한 表〈2〉의 (2)와 (3)은 地域別 分類가 不可能한 것들이며, 굳이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意味가 없다. 따라서 地域別 分類은 文書를 對象으로 할 때 一次的 分類 보다는 副次的인 分類에 適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土地의 賣買文書를 一次 分類에서는 “土地文記”에 분류하고, 二次 分類에서는 이들 土地文記를 다시 地域別로 分類하는 따위이다. 一般圖書를 對象으로한 分類法 들에 있어서도 主題가 地理인 경우를 除外하고는 모두 副次的 分類에만 適用하고 있다.¹⁵⁾

15) K.D.C., D.D.C. 등이 모두 그러하다. 그러나 C.C.는 主類인 “U”(Geography)에 있어서도 一次分類의 기준을 地域에 두지 않았다.

⑤ 年代別 分類

年代別 分類도 위의 地域別 分類와 마찬가지로 單獨으로 使用하는 것 보다는 어느 한 分類內에서 必要에 따라 適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一般圖書를 對象으로한 分類法들에 있어서도 이 기준을 一般分類에 適用한 例는 없다.

⑥ 發給者別 및 ⑦ 受取者別 分類

이들 分類方法도 위의 地域 또는 年代別의 分類와 같이 副次的 分類에서나 適用될 수 있는 기준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分明히 해야할 것은 文書構成의 重要的 要素인 發給者와 受取者의 對象이다.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說明될 수 있으니, 卽 그 하나는 發給者나 受給者를 말할때 特定機關이나 個人을 具體的으로 지적할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特定對象을 가리키지 않고 一般的인 名稱을 사용하여 모호하게 指稱할 경우이다. 例를 들어 前記表〈2〉의 (1)은 그 發給者가 抱川縣이고 受取者는 李龍柱이나 一般的인 名稱을 사용하여 모호하게 부를 경우에는 發給者를 “官府”; 受取者를 “私人”이라고도 한다. 前者와의 區別을 위해 後者와 같은 경우를 어색한 表現이긴 하지만 “發給者群”, “受取者群”(또는 發給對象群)이라고 우선 부르기로 하겠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 다루고 있는 發給者와 受取者는 위의 發給者群이나 受取者群과는 區別되는 것임으로, 特定個人이나 기관을 指稱할 경우만이 이 分類基準의 對象이 될 수 있겠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古文書分類에 있어서는 이를 對象으로 한 7가지 分類 基準 가운데 出處別과 類型別이 가장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出處別은 出處가 확실한 文書들을 對象으로 할때 可能하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基準들은 副次的인 分類에 適用될 수 있다는 것 등을 알아보았다.

따라서 本 試案의 目的이 出處가 不確實한 文書群을 對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適用될 수 있는 기준도 마땅히 類型別이 될 수 밖에 없겠다.

IV. 類型別 分類法(試案) 解說

(1) (目的 및 對象)

이 分類法은 出處가 不確實하고 一定한 體系나 原則이 없이 收集된 古文書들의 分類를 위해 考案된 것이다. 그리고 이 分類法에서 다루고 있는 古文書의 範圍는 朝鮮朝時代(1392~1910)의 公·私 文書에 限하며, 古文書의 一般概念에서 벗어난 備忘錄, 日誌, 帳簿 등은 對象에서 除外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다.

(2) (分類記號의 構成)

分類記號는 基本記號와 附隨記號로 構成되며, 基本記號는 쌍점(:)을 中心으로 하여 左側에 두자리 數字, 右側에 한자리 내지 두자리 數字로 構成되고, 附隨記號는 任意記號로써 必要에 따라 使用하되 基本記號 다음에 數字 또는 文字로 表示한다.

(3) (基本記號—發給者群 및 受取者群別 表示)

첫째 자리 數字는 發給者群을, 둘째 자리 數字는 受取者群을 각각 表示한다. 但 “8”의 “外交文書”와 “9”의 “其他” 그리고 둘째 자리 數字 중 “0”은 例外이다.

(4) (基本記號—類型別 表示)

쌍점(:) 다음의 한자리, 또는 두자리 數字는 古文書의 類型別 表示로서 그 配列順序는 一般 慣用에 따랐다.

[例]

- | | |
|----------------|-------------------------|
| (i) 1 3 : 1 9 | 國王(發給)이 官員(受取)에게 내린 文書중 |
| ↓ ↓ ↓ | 教牒의 形式을 갖춘 것 |
| 國官 教 | |
| 王員 牒 | |
| | |
| (ii) 3 1 : 1 3 | 官員(發給)이 國王(受取)에게 올린 文書중 |
| ↓ ↓ ↓ | 上訴의 形式을 갖춘 것. |
| 官國 上 | |
| 員王 訴 | |

위의 記號중 쌍점(:) 왼쪽에 있는 數字의 의미는 그 位置에 관계 없이 同一하다. 卽 “1”은 國王을, “3”은 官員(官府)을 의미한다.

(5) (附隨記號)

附隨記號는 文字 또는 數字로 構成되며 被分類體의 性質에 따라 任意選擇하여 使用할 수 있다. 發給者 및 受取者別 表示에서는 文字를, 地域別 및 年代別 表示에서는 數字를 各各 記號로 使用한다.

(6) (附隨記號—發給者 및 受取者別 表示)

類型別로 이미 分類된 文書를 더 細分하여 發給者나 受取者 이름의 字母 順으로 배열하고저 할 경우 이 記號를 使用한다. 例를 들면 錄券이나 教旨 등을 受取者別로 上訴文이나 簡札 등을 發給者 別로 各各 배열하는 따위이다. 記號로는 人名의 앞머리 두 字를 따서 使用하고, 記載는 基本記號 下段에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만일 基本記號에 잇대어 記載하고저 할 경우에는 附隨記號 앞에 符號 불임표(-)를 使用한다.

[例]

尹致善에게 내린 教牒 → 13 : 18 - 윤치

또는 13 : 18

윤치

曹得贊이 李松禾에게 보낸 書簡 → 44 : 34 - 조득

또는 44 : 34

조득

(7) (附隨記號—地域別·年代別 表示)

類型別로 이미 分類된 文書를 더 細分하여 地域別 또는 年代別로 排列하고저 할 경우 이 記號를 使用한다. 例를 들면 土地文記는 地域別로 綸音이나 朝報는 年度別로 各各 분류하는 따위이다. 地域別 記號로는 附隨記號表, I 地理區分記號를 使用하고, 年代別記號로는 附隨記號表, II 年代區分記號를 使用하거나 또는 西紀年度를 아라비아 數字로 表示하여 使用할 수 있다. 이들 附隨記號의 記載는 基本記號 下段에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만일 基本記號에 잇대어 기재 하고저 할 경우에는 地域別 記號 앞에 符號 등호(=)를, 年代別 記號 앞에 斜線표(/)

를 각각 表示한다.

[參考] 附隨記號表, I의 地理區分은 33年 丙申(1896) 朝鮮朝의 마지막 行政區域改編에 依據하였다.¹⁶⁾ 地名은 時代에 따라 자주 바뀌어 한때는 縣이었던 곳이 郡으로 승격되기도 하고, 또는 그 반대로 郡이 縣으로 혹은 他郡으로 병합되기도 하여 많은 변천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천에 관계없이 1896年 現在 改編된 해당 地名에 분류한다.

[例]

春川南內里所在田畝買賣文書 44:12 또는 44:12=51
51

顯宗 10年 6月 1日(1669)에 33:65 또는 33:65/ㄱ69
發給한 朝報 ㄱ69 또는 33 65/1669

(8) (附隨記號 — 混用 表示)

附隨記號는 基本記號 다음에 使用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附隨記號 다음에 使用할 수도 있다. 例를 들면 類型別로 이미 分類된 土地文記들을 더 細分하기 위하여 地域別로 分類하고 同一地域에 속하는 文書들을 다시 年度別로 分類하는 따위이다. 이런 경우에는 附隨記號의 記載位置가 基本記號 下段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下段 첫머리에 記載되지 않는 限 該當 符號表示를 해야 한다.

[例]

乾隆 6年(1741)의 海州交井六里所在
土地文記 44 : 12 또는 44:12=61/ㄱ41
61/ㄱ41

(9) (其他)

i) 收集된 古文書 중에서 出處가 확실한 一部 古文書 만을 따로 分離하여 保管하고자 할 경우(特히 量的으로 分離 保管할만한 價値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分類記號의 上段 또는 그 앞에 出處를

16) 權相老 : 韓國地名沿革考. 서울, 東國文化社, 1961.

意味하는 特定記號를 附加하여 別도 배열한다. 記號로는 該當 人名 또는 機關名의 앞머리 두字를 채택하여 사용한다.

[例]

金鍾德氏宅保存文書 中 萬曆十六年(1588)	김중
金弘遠에게 내린 教旨	13:17
	김홍 / □88.

ii) 收集된 古文書 중에 文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詩券, 帳簿 等의 一部가 包含되어 있을 때 이를 分離하지 않고 古文書와 함께 보관하고 져 할 경우에는 非古文書類區分表를 參考하여 基本記號의 둘째 자리가 “0” 으로 끝난 곳에 분류할 수 있다.

[例]

御製詩一首(正祖 親筆, 1785 年)

10:1	또는 10:1-정조 / 85
정조 / 85	

陶山書院奴婢案

50:7	또는 50:7-도산
도산	

iii) 符號用例

쌍 점 (:) 은 類型別 分類記號 앞에 사용한다.

붙임표 (-) 는 人名 또는 機關名 앞에 사용한다.

등 호 (=) 는 地名 앞에 사용한다.

사 선 (/) 은 年度 앞에 사용한다.

V. 結 語

以上 論究한 바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古文書의 文類는 그 對象에 따라 크게 두가지 方法을 고려할 수 있겠다. 卽 그 하나는 出處가 確실한 文書와 記錄類들을 전문적으로 수집· 보관하고 있는 機關이나 團體의 大規模 文書集團을 對象으로 한 分類方法이고, 다른 하나는 出處가 不確實한 文書들을 散發의로 수

집한 小規模의 文書集團을 對象으로한 分類方法이다.

(2) 이 研究는 後者의 文書集團을 對象으로 하였으며, 時代的으로는 朝鮮朝時代 卽 1910年까지로 制限하였다.

(3) 古文書를 위한 分類基準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出處別과 類型別의 두가지 基準을 除外하고는 모두 副次的 分類 目的으로나 그 適用이 可能하고, 基本的인 分類基準으로 채택하기에는 不適當하다. 따라서 本 研究의 對象인 小規模의 出處가 不確實한 文書集團의 分類에 있어서는 類型別 基準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方法이라고 하겠다.

(4) 本 研究에서 다루지 아니한 1910年 以後의 文書와 出處가 확실한 文書·記錄類를 함께 보관하고 있는 규모가 큰 機關들을 위한 分類方法이 후속 연구로써 進行되어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經國大典
 續大典
 大明律直解
 大典通編
 大典會通
 同文彙考
 百憲摭要
 紹修書院謄錄
 受教輯錄
 新補受教輯錄
 儒胥必知
 新式儒胥必知
 典律通補
 秋官志
 春官志

度支志

通文館志

光山金氏烏川古文書. 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國立中央圖書館: 고문서해제, I. II. 서울, 1972 ~ 73.

法制處: 古法典用語集. 서울, 育志社, 1981.

扶安金氏愚礮古文書. 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서울大圖書館: (서울大學校所藏) 古文書集眞, 1972.

吏讀集成(朝鮮總督府中樞院), 1937.

權相老: 韓國地名沿革考. 서울, 東國文化社, 1961.

金東旭: 古文書集眞; 壬亂以前文書を 主로. 서울, 延大人文科學研究所, 1972.

金約瑟: 古文書論考, 國會圖書館報, v.4. no.8~10(1967.8~10).

金在得: 古文獻用語解例; 朝鮮王朝篇. 서울, 培英社, 1983.

白 麟: 古文書의 研究와 그 整理問題. 國會圖書館報, v.1. no.4.

崔承熙: 韓國古文書研究. 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Cook, M. : Archives Administration. Kent, Dawson, 1977.

Holmes, O.W. : Archival Management-Five Different Operations at Five Different Levels. The American Archivist, v.27, no.1(Jan.1964).

Maltby, A. : Sayer's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London, Andre Deutsch, 1978.

Ranganathan, S.R. :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London, Lib. Assoc., 1957.

Ranganathan, S.R. : Colon Classification. 6th ed. Bombay, Asia Pub., 1960.

Schellenberg, T.R. : The Management of Archives. N. Y., Columbia Univ., 1965.

附錄：古文書分類法(案)

10	國王文書	13 : 22	批答
12	對宮家	13 : 23	宜麻文；內賜· 宜賜記； 其他 賜送記
12 : 1	玉冊	13 : 29	其他 御押標信(宣傳標信 등)
12 : 2	竹冊	14	對民(對私人)
12 : 3	諡冊	14 : 1	教書
12 : 4	哀冊	14 : 2	綸音
12 : 5	封爵	14 : 3	宥旨
12 : 6	教命	15	對教育機關(書院, 鄉校 등)
12 : 7	密教		: 11-29 必要에 따라 13:11 ~29 와 같이 區分 한다.
12 : 8	遺教	16	對宗教機關(佛寺, 道觀 등)
12 : 9	其他		: 11-29 必要에 따라 13:11 ~29 와 같이 區分 한다.
13	對官府	17	對結社
13 : 11	教書, 詔書		: 11-29 必要에 따라 13:11 ~29 와 같이 區分 한다.
13 : 12	諭書		
13 : 13	有旨		
13 : 14	有旨		
13 : 15	封書		
13 : 16	密教		
13 : 17	教旨 受取者 이름의 字母 順으로 배열한다. 必要하면 別表<1> 의 記號를 아래 例와 같이 展開하여 사용 할 수 있다. 例: 文科紅牌 13-172		
13 : 18	教牒	20	宮家文書
13 : 19	錄券	21	對國王
13 : 21	祿牌		

21 : 11-29	必要에 따라 31:11 ~29 와 같이 區分 한다.	31 : 14	劄子
22	對宮家	31 : 15	啓
22 : 1	箋文	31 : 151	啓本
22 : 9	其他	31 : 152	啓目
23	對官府	31 : 153	狀啓
23 : 11	內旨	31 : 154	書啓
23 : 12	慈旨	31 : 156	錄啓
23 : 13	徽旨	31 : 157	草記
23 : 14	懿旨	31 : 158	省記(入直省記 ; 啓省記)
23 : 15	令書	31 : 159	其他
23 : 16	令旨	31 : 16	薦舉單子
23 : 17	手本	31 : 17	草都目
23 : 18	璿源錄世系單子	31 : 18	呈辭(呈辭受由)
23 : 19	敦寧單子	31 : 19	諡號望單子
23 : 21	下答	31 : 21	褒貶單子
23 : 22	牌旨(圖書牌子)	31 : 22	進上單子
23 : 29	其他	31 : 23	薦新單子
24	對民(私人)	31 : 24	問安單子
24 : 1	封書	31 : 25	祇受單子
24 : 2	道掌許給文	31 : 26	謝恩單子
24 : 3	標文	31 : 27	六行單子
24 : 9	其他	31 : 28	下直單子
25 - 27	必要에 따라 15-17 과 같이 區分하여 사 용한다.	31 : 29	處女單子 및 其他
30	官府文書	32	對宮家
31	對國王	32 : 1	玉冊
31 : 11	玉冊	32 : 2	箋文
31 : 12	箋文	32 : 3	上書
31 : 13	上疏	32 : 4	申本
		32 : 5	申目
		32 : 6	狀達
		32 : 7	回達

- | | | | |
|--------|---------------------------|--------|------------|
| 32:9 | 其他 | 33:39 | 保結 ⇒ 34:16 |
| 33 | 對官府(官員) | 33:41 | 署經單子 |
| 33:11 | 關(移牒; 移文) | 33:42 | 諭號署經 |
| 33:12 | 牒呈(呈文) | 33:43 | 褒貶同議單子 |
| 33:13 | 書目 | 33:44 | 推考發緘·緘答 |
| 33:14 | 帖(劄; 帖文; 帖紙;
帖子)⇒34:19 | 33:441 | 京官 |
| 33:15 | 甘結 | 33:442 | 外官 |
| 33:16 | 論題 | 33:45 | 遲晚 |
| 33:17 | 論關 | 33:46 | 跟捕狀 |
| 33:18 | 立法出依牒 | 33:47 | 捕盜單子 |
| 33:19 | 起復出依牒 | 33:48 | 配文 |
| 33:21 | 通諭 | 33:49 | 到配狀 |
| 33:22 | 傳令 | 33:51 | 祿標 |
| 33:23 | 軍令狀 | 33:52 | 尺文(자문) |
| 33:24 | 手本 | 33:53 | 陳省 |
| 33:25 | 論報 | 33:54 | 問安物種單子 |
| 33:26 | 文狀 | 33:55 | 古風 |
| 33:27 | 文狀書目 | 33:56 | 行下 |
| 33:28 | 告目 | 33:57 | 路引 |
| 33:29 | 頌狀 | 33:58 | 路文(先文) |
| 33:31 | 稟告 | 33:59 | 行狀 |
| 33:32 | 邸報 | 33:61 | 護照 |
| 33:33 | 赴學狀 | 33:62 | 馬帖 |
| 33:34 | 公狀 | 33:63 | 草料(馬文) |
| 33:35 | 望記 | 33:64 | 回還文 |
| 33:351 | 風憲望記 | 33:65 | 朝報 |
| 33:352 | 主人望記 | 33:66 | 回通 |
| 33:36 | 解由(解由狀; 解由
牒; 傳掌記; 重記) | 33:67 | 馳通 |
| 33:37 | 修史狀 | 33:68 | 馳進狀 |
| 33:38 | 勿禁帖 ⇒ 34:18 | 33:69 | 其他 |
| | | | 試射單子 등 |
| | | 34 | 對民(私人) |
| | | 34:11 | 完文 |

34: 12	立案
34: 13	謄給
34: 14	傳准
34: 15	準戶口
34: 16	保結 ⇒ 33: 39
34: 17	照訖帖
34: 18	勿禁帖 → 33: 38
34: 19	帖給(帖下; 下帖) ⇒ 33: 14
34: 21	黃貼
34: 22	收稅標文
34: 23	榜文(告示) ⇒ 回文 ; 通文
34: 24	立旨 → 所志등 該當文書
34: 25	題音(대김; 題辭; 題旨) → 所志등 該當 文書
34: 29	其他
35	對教育機關
35: 1	完文
35: 2	立案
35: 3	謄給
35: 4	通諭
35: 5	帖文
35: 9	其他
36	對宗教機關
: 1-9	35: 1~9 와 같이 區 分한다.
37	對結社
: 1-9	35: 1~9 와 같이 區 分한다.

40	私人文書
41	對國王
41: 1	上疏
41: 2	上言
41: 3	原情 ⇒ 43: 13
41: 9	其他
42	對宮家
42: 1	上書
42: 9	其他
43	對官府
43: 11	所志(발판; 白活)
43: 12	等狀
43: 13	原情 ⇒ 41: 3
43: 14	上書
43: 15	單子
43: 16	倂音(다짐; 倂音狀)
43: 17	議送
43: 18	陳告狀
43: 19	陳試狀
43: 21	照律時功議單子
43: 22	功臣子孫世系單子
43: 23	戶口單子
43: 24	先尺
43: 29	其他
44	對私人
44: 11	家舍(家屋)文記
44: 12	土地文記
44: 13	奴婢文記
44: 131	自賣文記
44: 132	贖良·贖身文記
44: 14	分財文記(분깃; 分 衿; 合給文記; 傳係文記)

44 : 141 衿付文記
 44 : 15 別給文記
 44 : 16 許與文記
 44 : 17 和會文記
 44 : 18 手標(手記) ; 於音
 (魚驗) ⇒ 74:6
 44 : 19 京主人文記
 44 : 21 監官文記
 44 : 22 貢人文記
 44 : 221 其人文記
 44 : 23 導掌文記
 44 : 24 旅客主人文記 (船主
 人 ; 商賈主人文記 등)
 44 : 25 船隻文記
 44 : 26 鹽盆文記
 44 : 27 漁場文記
 44 : 28 典當文記
 44 : 29 其他文記
 (柴場文記 등)
 44 : 31 立後成文
 44 : 32 立議
 44 : 33 完議
 44 : 34 簡札(書狀)
 44 : 35 婚書
 44 : 36 休書(수세)
 44 : 37 遺書
 44 : 38 賻儀單子 ; 祭需單子
 44 : 39 其他
 45 對教育機關
 : 1-9 必要에 따라 任意展
 開하여 사용할 수
 있다.

46 對宗教機關
 : 1-9 必要에 따라 任意展
 開하여 사용할 수
 있다.
 47 對結社
 : 1-9 必要에 따라 任意展
 開하여 사용할 수
 있다.
 50 教育機關(書院 ; 鄕校 등)
 但, 成均館은 여기에
 包含되지 아니한다.
 51 對國王
 : 1-9 41:1-9 와 같이 區
 分한다.
 52 對宮家
 52 : 1 上書
 52 : 9 其他
 53 對官府
 53 : 1 上書
 53 : 2 稟目
 53 : 9 其他
 54 對私人
 54 : 1 完議 · 立議
 54 : 2 望記
 54 : 3 通文
 54 : 4 墨牌
 54 : 9 其他
 55 對教育機關
 55 : 3 通文
 55 : 9 其他
 56 對宗教機關

- 57 對結社
- 60 宗教機關(佛寺, 道觀 등)
- 61 對國王
: 1-9 41: 1-9 와 같이 區
分한다.
- 62 對宮家
- 62: 1 上書
- 62: 9 其他
- 63 對官府
: 1-9 必要하면 53 에 準
한다.
- 64 對私人
: 1-9 必要하면 54 에 準
한다.
- 65 對教育機關
- 66 對宗教機關
- 67 對結社
- 70 結社
- 71 對國王
必要하면 41 에 準
한다.
- 72 對宮家
必要하면 42 에 準
한다.
- 73 對官府
: 1-9 必要하면 43 에 準
한다.
- 74 對私人
- 74: 1 帖文
- 74: 2 傳令
- 74: 3 通文(回文)
- 74: 4 差定; 望記

- 74: 5 驗標
- 74: 6 魚驗(於音; 矩券)
⇒ 44: 18
- 74: 7 換簡(換標)
- 74: 8 股本標; 稷標
- 74: 9 其他
- 75 對教育機關
必要하면 55 에 準
한다.
- 76 對宗教機關
- 77 對結社
- 80 外交文書
- 81 韓國外交文書
特定對象國에 分類할
수 없는 外交關係文
書들을 여기에 分類
한다. 例: 萬國平和
會議關係資料
- 82 對中國外交文書
中國對韓國의 外交文
書를 包含한다. 文書
의 類型에 관계없이
年度順으로 배열한다
別法: 다음 角括弧
[] 参照.
[82: 1-9] 必要에 따라 類型別
로 展開한다.
例: 82: 1 表文
82: 2 箋文 등
- [821] 中國對韓國
- 83 對日本
82 에 準한다.

- 84 對英國
82에 準한다.
- 85 對美國
82에 準한다.
- 86 對露國
82에 準한다.
- 87 對獨國
82에 準한다.
- 88 對佛國
82에 準한다.
- 89 對其他諸國
82에 準한다.
- 90 其他
- 91-9 任意로 展開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甲午更張以
後의 文書나, 또는 모
든 祭文類를 한자리에
모아 배열하고자 할 경
우에는 다음과 같이 展
開한다.

〔展開例〕

- [91-98] 甲午更張以後의 文書
1~8과 같이 區分
한다.
例: 高宗의 詔書
913:11
韓佛外交文書
988
1~8에 직접 분류
할 수도 있다.

[991-997] 祭文類

- 1~7과 같이 區分
한다.
例: 國王의 致祭文
991
寺社의 願文
996
非古文書類(別表, II,
參照)에 분류할 수도
있다.

附隨記號表 I. 地理區分

基本記號나 다른 附隨記號에 잇대어 地理區分記號를 사용할 경우에는 등호(=)를 앞세워 적는다.

[例]

忠州笙洞面所在 44:12 = 21
田畚賣買文書

昆陽縣居住 42:23 - 이장 = 47
李長英의 戶口單子

1 京畿道

- 11 漢城(京城)
- 12 開城, 豊德
- 13 江華, 喬桐
- 14 仁川, 富平, 陽川, 金浦, 通津
- 15 長湍, 漣川, 朔寧, 麻田, 積城, 坡州, 交河
- 16 高陽, 楊州, 永平, 抱川, 加平
- 17 驪州, 利川, 陰竹, 楊根, 砥平, 廣州, 果川, 安山, 始興(衿川)
- 18 龍仁, 陽知, 竹山, 安城, 陽城
- 19 水原, 南陽, 振威

2 忠清道

- 21 忠州, 清州, 清安, 文義
- 22 堤川, 清風, 永春, 丹陽
- 23 槐山, 延豊, 陰城, 鎭川
- 24 沃川, 青山, 永同, 黃磣,

報恩, 懷仁

- 25 公州, 魯城(尼山), 恩津
- 26 連山, 石城, 鎭岑, 懷德, 燕岐, 全義
- 27 木川, 天安, 稷山, 平澤, 溫陽(溫水), 新昌, 牙山, 唐津, 沔川, 瑞山, 泰安, 海美
- 28 禮山, 德山, 大興, 洪州, 結城, 鰲川, 保寧, 藍浦, 青陽, 定山
- 29 扶餘, 林川, 鴻山, 庇仁, 舒川, 韓山

3 全羅道

- 31 全州, 高山, 金溝, 金堤, 萬項
- 32 泰仁, 井邑, 古阜, 淳昌, 任實, 南原, 雲峯
- 33 長水, 鎭安, 龍潭, 茂朱, 錦山, 珍山
- 34 益山, 礪山, 龍安, 咸悅,

- 臨陂, 群山, 沃溝, 扶安,
高敏, 茂長(興德)
- 35 光州(武珍), 靈光, 木浦,
務安, 智島, 咸平, 羅州,
南平
- 36 潭陽, 昌平, 長城, 玉果,
谷城, 求禮
- 37 光陽, 順天, 樂安, 興陽
(高興), 長興, 寶城, 同
福, 和順, 綾州
- 38 康津, 靈巖, 海南, 珍島
(海珍), 莞島, 麗水,
突山
- 39 濟州, 旋義, 大靜
- 4 慶尙道
- 41 慶州, 延日, 長鬐, 清河,
興海, 慶山, 慈仁, 河陽
- 42 大邱, 玄風, 清道, 星州,
高靈, 知禮, 金山, 開寧
- 43 善山, 尙州, 咸昌, 聞慶,
龍宮, 醴泉, 比安, 義城
- 44 義興, 軍威, 仁同, 漆谷,
新寧, 永川
- 45 安東, 禮安, 奉化, 順興,
豐基(基川), 榮州(榮川),
英陽, 寧海, 盈德, 眞寶,
青松
- 46 釜山, 東萊, 蔚山, 彥陽,
機張, 梁山, 密陽, 靈山,
昌寧
- 47 晉州, 泗川, 昆陽(昆南),
河東, 丹城(珍城), 山清
(山陰), 咸陽, 安義(安
陰), 居昌
- 48 陝川, 草溪, 三嘉, 宜寧,
漆原, 金海
- 49 昌原, 熊川, 鎭海, 巨濟,
固城, 南海
- 5 江原道
- 51 春川, 洪川
- 52 橫城, 原州
- 53 平昌, 寧越, 旌善
- 54 三陟, 蔚珍, 平海, 江陵
- 55 襄陽, 杆城, 高城
- 56 麟蹄, 楊口, 華川(狼川)
- 57 金化, 金城, 鐵原
- 58 安峽, 伊川, 平康
- 59 淮陽, 通川, 歙谷
- 6 黃海道
- 61 海州, 康翎, 瓮津
- 62 長淵, 松禾, 豐川, 殷栗,
長連
- 63 安岳, 文化, 信川, 載寧
- 64 鳳山, 黃州
- 65 瑞興, 平山
- 66 白川, 延安, 金川(江陰),
兔山, 新溪(新恩)
- 67 遂安, 谷山
- 7 平安道
- 71 平壤, 江西, 咸從, 甌山,
龍岡, 三和, 鎭南浦
- 72 順安, 永柔, 肅川, 慈山,
殷山, 順天
- 73 安州, 价川

- 74 德川, 寧遠, 孟山
- 75 陽德, 成川, 江東, 三登,
祥原, 中和
- 76 博川, 嘉山, 定州, 郭山,
泰川
- 77 龜城, 宣川, 鐵山, 龍川
- 78 義州, 朔州, 昌城, 碧潼,
楚山(理山), 渭原, 慈城,
厚昌(茂昌), 江界
- 79 熙川, 雲山, 寧邊

- 8 咸鏡道
- 81 安邊, 德源
- 82 文川, 高原, 永興
- 83 定平, 咸興, 洪原, 北青
- 84 利原, 端川, 甲山, 三水
- 85 長津
- 86 吉州(吉城), 明川
- 87 鏡城, 慶興, 慶源
- 88 穩城, 鍾城, 會寧
- 89 富寧, 茂山

附隨記號表 II. 年代區分

基本記號나 다른 附隨記號에 잇대어 年代記號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
선(/)을 앞세워 적는다.

[例]

咸豐 4年(1854)奴婢賣買文書 44:13/스44

乾隆 16年(1751)의 43:11-이윤/스51
李允明 山訟事所志

- ㄱ. 1 ~ 999 AD
- ㄴ. 1000 ~ 1299 "
- ㄷ. 1300 ~ 1399 "
- ㄹ. 1400 ~ 1499 "
- ㅁ. 1500 ~ 1599 "

- ㅂ. 1600 ~ 1699 AD
- ㅅ. 1700 ~ 1799 "
- ㅇ. 1800 ~ 1899 "
- ㅈ. 1900 ~ 1999 "

別表 I. 教旨區分

教旨區分記號는 基本記號 13:17 에 잇대어 사용한다.

[例]

柳起門爲朝奉大夫	13:171
行司憲府監察者	유기/日06
萬曆 34 年 4 月 23 日 (1606)	

- | | |
|--------------|------------|
| 1. 告身 | 6. 封君·封爵 |
| 2. 紅牌(文科) | 7. 追贈·贈職 |
| 3. " (武科) | 8. 賜諡·贈諡 |
| 4. 白牌(生員·進士) | 9. 賜牌 및 其他 |
| 5. " (雜科) | 空名帖을 包含한다. |

別表 II. 非古文書類區分

非古文書類區分記號는 基本記號의 둘째자리 數字 "0" 다음에 쌍점 (:)을 앞세워 적는다.

[例]

金正喜親筆詩一首	40:1
	김정

丹城鄉校儒生案	50:2
	단성

- | | |
|---------------|---------------------|
| 1. 詩文類 | 6. 田畝量案 |
| 2. 先生案, 人事錄 등 | 7. 奴婢案 |
| 3. 日誌, 事蹟記 등 | 8. 祭文類 |
| 4. 謄錄類, 帳籍類 | 991~997 에 분류할수도 있다. |
| 5. 節目類 | 9. 其他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Yi Dynasty Documents
and Records**

by Lee , Choon-he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i) to establish the principles particularly appropriate for the arrangement of archival collections in Korea, and (ii) to produce a workable model of classification scheme in conformity with the established principles.

The archival collections in Korea are roughly divided into two groups as follows.

(1) The collections of professional institutions of archives such as Korean National Archives.

(2) The collections preserved by libraries, museums, and other similar institutions as a secondary collection, and these groups of collections are generally non-systematic collecting.

For the arrangement of the former collections, the concept of "respect des fonds" which is universally accepted principles in archives are also applicable. But in case of the arrangement of the latter collections, the above mentioned principles are inappropriate because its collections are built in separate pieces of documents and records without any relevance to the original function or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Consequently it is badly needed to make some devices for the arrangement of these archival collections since the archival collections of Korea, in the majority of cases, belong to the latter.

* Professor of Library Science,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 author produced a tentative classification scheme, and adapted the korean traditional form (or type) of documents and records as a cardinal principle of the classification. The scheme is presented at the end of this paper.